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1164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미영

피고B

변론 종결2024. 11. 5.

판결 선고2024. 12.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3. 12. 1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13.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리스금 등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마쳤으며,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전2693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6. 'C은 원고에게 31,475,032원과 그 중 17,122,9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7. 24. 확정되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10.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C, G이 있으며, 상속분은 피고가 3/9, 자녀들이 각 2/9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12. 1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판단기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2002. 9. 12.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인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23년경까지 약 5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함께하였고 C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에게 부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과 관련하여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③ 특히 피고는 망인이 2015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진료받은 병원비 3,9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망인을 부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2022. 8. 31. 신용대출을 받았고,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서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외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분할협의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기여분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최지경

별지